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되는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이 표의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본다.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이라 함은 개인 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보건연구에 관한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를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이하 "검사·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자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수료) ①검사·시험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②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소속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

④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정밀검사·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검사의뢰 등) ①검사·시험의뢰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액에 상당하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검사·시험의뢰가 취소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검사·시험의뢰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환불할 수 있다.

③검사·시험의뢰된 항목중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검사·시험의뢰한 자에 대한 검사·시험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立法豫告 結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p>서울시 보건 환경연구원장</p>	<p>○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수수료 인상이 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비교·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일단 인상을 유보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검사항목이 추가되는 항목 중 일부에 대하여만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항목은 현실에 맞게 세분화 또는 내용 조정</p> <table border="1" data-bbox="480 804 906 1361"> <thead> <tr> <th rowspan="2">신설조정 또는 조정내용</th> <th colspan="2">신설 또는 조정건수</th> </tr> <tr> <th>당초</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보건복지부령 및 환경부령 기준적용</td> <td>393</td> <td>410</td> </tr> <tr> <td>행정자치부 원가분석 요령에 의한 인상</td> <td>34</td> <td>0</td> </tr> <tr> <td>신 설</td> <td>30</td> <td>13</td> </tr> <tr> <td>항목명칭 변경</td> <td>3</td> <td>0</td> </tr> <tr> <td>면 제</td> <td>1</td> <td>1</td> </tr> <tr> <td>계</td> <td>461</td> <td>424</td> </tr> </tbody> </table>	신설조정 또는 조정내용	신설 또는 조정건수		당초	변경	보건복지부령 및 환경부령 기준적용	393	410	행정자치부 원가분석 요령에 의한 인상	34	0	신 설	30	13	항목명칭 변경	3	0	면 제	1	1	계	461	424	<p>○ 의견반영 - 수수료 인상이 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유보조치하고 세부 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새로이 조정</p>
신설조정 또는 조정내용	신설 또는 조정건수																								
	당초	변경																							
보건복지부령 및 환경부령 기준적용	393	410																							
행정자치부 원가분석 요령에 의한 인상	34	0																							
신 설	30	13																							
항목명칭 변경	3	0																							
면 제	1	1																							
계	461	424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1]

검사·시험수수료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1. 현미경에 의한 관찰시험 (다만, 사진촬영시에는 1매당 1,500원씩 추가)	3,100
		2. 장내세균검사	3,800
		3. 레지오넬라균검사	11,300
		4. 혐기성균군검사	8,200
		5. 디프테리아균 및 백일해균검사	3,300
		6. 대장균군검사	5,500
		7. 일반세균수검사	4,400
		8. 유산균수검사	5,500
		9. 대장균군수검사	5,500
		10. 식중독검사	
		가. 살모넬라검사(Salmonella spp.)	6,600
		나. 병원성대장균검사	6,600
		다.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Yersinia enterocolitica)	6,000
		라. 장염 비브리오 (Vibrio parahaemolyticus)	6,000
		마. 클로스트리듐 페르프링겐스 (Clostridium perfringens)	8,800
		바. 바실루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6,000
		사.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6,000
아.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Clostridium botulinum)	8,8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11. 진균수검사	5,000
		12. 진균확인검사	5,000
		13. 진균분리동정검사	8,800
		14. 동물에 의한 중화검사	3,500
		15. 유행성이하선염 항체검사(CF Test)	10,900
		16. 아데노바이러스 항체검사(CF Test)	10,900
		17. 홍역항체검사(HI Test)	4,800
		18. 풍진항체검사(HI Test)	3,700
		19. 비형간염 에스항체(Anti-HBs) 검사 (PHA)	2,500
		20. 비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 (RPHA)	2,500
		21. 비형간염 씨항체(Anti-HBc)검사 (PHA)	2,500
		22. 비형간염 이항원(HBe Ag)검사 (RPHA)	2,500
		23. 비형간염 이항체(Anti-HBe)검사 (PHA)	2,500
		24. 비형간염 에스항체(Anti-HBs)검사 (EIA)	5,000
		25. 비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 (EIA)	5,000
		26. 비형간염 씨항체(Anti-HBc)검사 (EIA)	5,000
		27. 비형간염 이항원(HBe Ag)검사 (EIA)	5,000
		28. 비형간염 이항체(Anti-HBe) 검사 (EIA)	5,000
		29. 비형간염 에스항체(Anti-HBs)검사 (RIA)	7,500
		30. 비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 (RIA)	7,500
		31. 비형간염 씨항체(Anti-HBc) 검사 (RIA)	7,500
		32. 비형간염 이항원(HBe Ag)검사 (RIA)	7,500
		33. 비형간염 이항체(Anti-HBe)검사 (RIA)	7,500
		34. 리켓치아 항체검사(Weil-Felix Test)	1,500
		35. 신중후군출혈열 항체검사(IFA)	6,0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36. 폴리오항체검사(조직배양중화)	5,300
		37. 동물에 의한 병독분리검사 (Enteroviruses)	5,200
		38. 조직배양에 의한 병독 분리 동정검사 (HSV · Rota · CMV · Varicella · Zoster)	7,000
		39. 조직배양 중화시험 (HSV · Rota · CMV · Varicella · Zoster)	8,000
		40. 간접형광 항체검사 (HSV · CMV · Varicella · Zoster)	13,100
		4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검사(EIA)	3,200
		42. 광견병검사	0
		4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검사 (Western Blot)	34,100
		4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원검사(EIA)	37,800
		45. 일보뇌염 항체검사(HA · HI)	8,340
		46. 인플루엔자 분리검사	10,400
		47. 인플루엔자 항체검사(HI)	5,740
		소독약품에 관한 사항	
2. 살충제 감수성시험	14,000		
3. 살충제 실내 효력시험	15,000		
4. 살충제 잔류효과 시험	20,000		
5. 야외효력 평가시험	23,500		
의약품 및 화장품 류의 시험	의 약 품	1. 약전시험	약전에 수록 되어있는 시 험 항목별로 산정
		2.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시험 (변경에 대한 검토시험 포함)	30,000
		3. 수출인삼제제 검정	3,000
		4. 항생물질제제의 역가시험 (화학적 시험)	5,000
		5. 항생물질제제의 역가시험(생물학적시험)	9,000
		6. 발열성물질시험	5,5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의약품 및 화장품 류의 시험	의 약 품	7. 안전성시험	1,700
		8. 무균시험(직접법)	3,000
		9. 무균시험(멤브란필터법)	10,000
		10. 생균수시험	4,500
		11. 유산균제제시험(일성분 정량)	4,500
		12. 생약제제시험(일성분 정성)	1,800
		13. 생약제제시험(일성분 정량)	5,000
		14. 아미노산제제시험(일성분 정성)	500
		15. 단일아미노산제제의 정량시험	4,000
		16. 복합아미노산제제의 정량시험 (중산성 및 염기성 아미노산)	30,000
		17. 비타민제제시험(일성분 정성)	1,200
		18. 비타민제제시험(일성분 정량)	3,000
		19. 비타민제제시험(생물학적 정량)	9,000
		20. 봉해시험	700
		21.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및 대마시험 (일성분 정성)	2,000
		22.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및 대마시험 (일성분 정량)	5,000
		23.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및 대마시험 (미지성분 일성분)	5,000
		24. 수분시험(칼피셔법)	6,000
		25. 주사제유리용기시험(무색)	1,400
		26. 주사제유리용기시험(착색)	4,000
		27. 수액용고무마개시험	30,800
		28. 수액용플라스틱용기시험	44,000
		29. 인슐린함량시험(생물학적 방법)	110,000
		30. 효소제제시험(일항목)	3,000
		31. 호르몬제제시험(일성분 정성)	1,000
		32. 호르몬제제시험(일성분 정량)	5,500
		33. 기타 의약품시험(일성분 정성)	1,0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 수 료 (단위:원)
의약품 및 화장품류의 시험	의약품	34. 기타 의약품시험(일성분 정량)	3,000
		35. 함량 균일성시험	30,000
		36. 용출시험(일성분)	20,000
		37. 순도시험(일항목)	1,300
		38. 극한점도시험	1,300
		39. 불용성이물검사	1,300
		40. 비중시험	1,300
		41. 강열잔분시험	1,300
		42. 증발잔류물시험	1,300
		43. 용점시험	1,300
		44. 비선광도시험	1,300
		45. 미생물허용시험	29,700
		46. 항원성시험	65,600
		47. 급성독성시험	1,700
		48. 형상시험	500
		49. 제산도시험	3,000
		50. 효능시험	3,000
		51. 경도시험	1,300
		52. 입도시험	1,300
		53. 실용량시험	1,300
		54. 흡착력시험	3,000
		55. 입자도시험	1,300
		56. 불용성미립자시험	1,300
		57. 중류시험	1,300
		58. 소포력시험	1,300
		59. 흡광도시험	1,300
		60. 굴절률시험	1,300
		61. 유연물질시험	1,300
		62. 히스타민시험	9,000
		63. 알코올수시험	3,000
		64. 건조감량시험	1,300
		65. 피내반응시험	46,000
		66. 이식시험	23,000
		67. 용혈시험	10,0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의약품 및 화장품류의 시험	의약품	68. 회분시험(산불용성회분)	1,300	
		69. 엑스함량시험	1,300	
		70. 보존제시험(일성분시험)	3,000	
		71. 엔도톡신시험	30,000	
		72. 상기의의 시험(1항목당)	3,000	
	*성상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화장품	1. 화장품시험(일성분 정성)	1,000	
		2. 화장품시험(일성분 정량)	3,000	
		3. 화장품시험(순도 일항목)	1,300	
		4. 분말도시험	1,300	
	공통	1. 중량(용량)편차시험	1,300	
		2. 내용량시험	1,300	
		3. 피 · 에이치(pH)시험	1,300	
		4. 내용압력시험	1,300	
		5. 안정성시험	1,300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등의 시험	의료용구	1. 콘돔	1,000	
		2. 주사기	3,300	
		3. 일회용주사기(플라스틱)	38,500	
		4. 주사침	2,700	
		5. 일회용주사침	74,700	
		6. 일회용수혈수액세트	27,500	
		7. 염화비닐수지제혈액세트	55,000	
		8. 혈액투석기	105,300	
		9. 혈액회로	46,800	
		10. 수술용고무장갑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7,700	
		11. 체액배출유도관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12,100	
		12. 복막관류세트(스타일렛을 포함한 경우)	50,000	
		13. 복막관류세트(스타일렛을 제외한 경우)	48,000	
		14. 외과용견제봉합사	7,600	
		15. 도뇨관	79,800	
		16. 도뇨관(로빈슨식)	74,6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등의 시험	의료용구	17. 봉합사(착색된 경우 순도시험 2항목 별도추가, 바늘이 부착된 경우 순도시험 4항목 및 바늘 부착 강도시험 2,000원 별도추가)	7,600
		18. 스칼프베인세트	31,400
		19. 일회용액체흡인기	91,000
		20. 형상시험	1,300
		21. 인장강도시험	2,000
		22. 점착력시험	2,000
		23. 신장율시험	2,000
		24. 일회용정맥용카테타	131,400
		25.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75,600
		26. 인공수정체	130,700
		27. 진단용엑스선장치(촬영 또는 투시전용)	36,000
		28. 진단용엑스선장치(촬영용 투시겸용)	54,000
		29.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및 콘덴서식엑스선장치	25,000
		30. 초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가. 일반촬영용	6,000
		나. 파노라마 · 세파로 촬영용	22,000
		31. 초음파영상진단장치	20,000
		32. 선형가속치료장치(복합에너지)	50,000
		33. 선형가속치료장치(단일에너지)	39,000
		34. 코발트60 치료장치	30,000
		35. 근접치료기	21,000
36. 감마카메라(헤드1개기준, 헤드1개추가시 8할가산)	49,500		
37.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47,200		
38. 감상선진단장치	37,500		
39.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80,000		
40. 자기공명영상전산화단층촬영장치	80,000		
41. 베타선조사시험(1회/4개이하)	18,0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등의 시험	의료용구	42. 감마선조사시험(1회/4개이하)	17,000
		43. 엑스선조사시험(1회/4개이하)	33,000
		44. 방사능오염시험	80,000
		45. 엑스선사진관찰대(1대형)	400
		46. 방사선필름카세트	1,300
		47. 산란엑스선제거용그리드	1,000
		48.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1,100
		49. 진료용엑스선방어장갑	1,100
		50.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1면형)	1,800
		51. 기타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시험	31,000
		의약부의품	1. 생리처리용위생대
	2. 마스크		
	가. 수술용		13,600
	나. 보건용		9,100
	3. 월경처리용담폰		14,300
	4. 안대		9,400
	5. 치약상대시험		1,300
	6. 분말도시험		1,300
	위생용품	1. 가아제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3,800
		2. 붕대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3,800
		3. 탈지면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2,600
		4. 반창고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 별도추가)	3,800
		5. 삼각근	1,700
		6. 스티키넷	5,000
		7. 광목붕대 (머스킨)	2,500
		8. 석고붕대	7,200
		9. 탄력붕대	3,500
		10. 압박대	18,000
		11. 복부용패드	13,200
		12. 팩가아제	14,0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등의 시험	위생용품	13. 소독포	7,800
		14. 수술포	7,800
		15. 형상시험	1,300
		16. 인장강도시험	2,000
		17. 점착력시험	2,000
		18. 신장률시험	2,000
	공통	1.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시험 (변경에 대한 검토 시험 포함)	30,000
		2. 기타시험(1항목당)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등의 수수료는 이 표의 의약품 및 화장품류의 시험 수수료에 준한다.	1,300
	식품	1. 피 · 에이치(pH)시험	1,100
		2. 비중시험	1,100
		3. 굴절률시험	1,100
		4. 색도시험	1,100
		5. 진공도시험	1,100
		6. 가스압시험	1,100
		7. 형광증백제시험	1,100
		8.미량영양성분(비타민 A, B ₁ , B ₂ , 나이아신, 칼슘, 인,철)시험 (1항목당 정량)	6,000
		9. 잔류농약시험	
		가. 동시다성분시험(5종농약기준) ※ 1농약 추가시마다	278,400 10,300
		나. 단성분시험(1종농약)	81,400
		10. 아플라톡신시험(정성시험)	20,000
		11. 아플라톡신시험(정량시험)	25,000
		12. 항생물질시험(정성시험)	4,000
		13. 항생물질시험(정량시험)	25,000
	14. 합성항균제시험(1성분당 정량)	25,800	
	15. 성장훈론제시험(1시료당 2항목)	180,3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등의 시험	식품	16. 산화방지제	55,000
		17. 보존료 시험법	33,000
		18. 착색료 시험법(타르색소)	13,000
		19. 인공감미료(정성시험)	13,000
		20. 발색제 시험(아질산염)	26,500
		21. 식이섬유	79,000
		22. 기타기기분석(1항목당)	30,000
		23. 상기 외의 시험(1항목당)	3,300
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등의 시험	첨가물	1. 확인시험(1항목당)	
		가. 정성반응	4,000
		나. 기기분석	25,000
		2. 순도시험(1항목당)	
		가. 정성반응	6,000
		나. 기기분석	30,000
		3. 건조 감량 시험	2,000
		4. 강열잔류물 시험	2,000
		5. 수분시험(칼피셔법)	4,400
		6. 정량시험	
		가. 색소(색가)	6,000
		나. 효소(역가)	32,000
		7. 기타	
		가. 적정법	5,000
		나. 기기분석	30,000
		8. 상기 외의 시험(1항목당)	유사시험 항목에 준함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식품·식품첨 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기구·용기 및 포장	1. 페놀시험	1,100
		2. 중금속시험	1,100
		3. 형광증백제시험	1,100
		4. 색소시험	1,300
		5. 염화비닐수지(PVC)규격시험	22,000
		6. 기타 기기분석(1항목당)	30,000
		7.상기 외의 시험(1항목당)	3,000
	장난감 기타 위생용품	1. 중금속시험	1,100
		2. 색소시험	1,100
		3. 형광증백제시험	1,300
		4. 상기 외의 시험(1항목당)	3,300
	세척제	1. 피·에이치(pH)시험	1,300
		2. 중금속시험	1,300
		3. 상기 외의 시험(1항목당)	4,000
	한약재검사	1. 생약 일성분 정성	3,000
2. 생약 일성분 정량		10,000	
3. 이물시험		3,000	
4. 순도시험(일항목)		3,000	
5. 회분		3,000	
6. 산불용성회분		3,000	
7. 건조감량		3,000	
8. 엑스함량		3,000	
9. 정유함량		3,000	
10. 중금속시험(총)		5,000	
11. 중금속시험(다성분-일성분)		10,000	
12. 표백제시험		25,0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가스성분시험		1. 암모니아	3,000
		2. 일산화탄소	3,500
		3. 염화수소	4,100
		4. 염소	3,400
		5. 황산화물	2,600
		6. 질소산화물	2,200
		7. 이황화탄소	4,500
		8. 포름알데히드	4,100
		9. 황화수소	5,100
		10. 불소	5,500
		11. 시안	3,400
		12. 브롬	3,900
		13. 벤젠	4,100
		14. 페놀	4,800
		15. 비소	3,400
		16. 수은	16,300
입자상물질 성분시험		1. 먼지	7,400
		2. 비산먼지	6,500
		3. 크롬 · 구리 · 카드뮴 · 니켈 또는 아연 등 중금속	항목당 16,300 (동일시료중 2항목 이상 분석시 항목당 1,400원씩 추가)
		4. 매연	600
악취시험		1. 직접관능법	2,200
		2. 공기회석관능법	15,500
		3. 기기분석법	
		가. 암모니아	38,000
		나. 황화수소 · 메틸메르캅탄 · 황화메틸 또는 이황화메틸	성분당 80,200
		다. 트리메틸아민	40,300
		라. 스티렌	40,300
		마. 아세트알데히드	30,3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환경소음진동 측정		1. 기록측정(소음측정)	2,200
		2. 기록측정(진동측정)	1,300
		3. 대역분석	
		가. 소음	3,300
		나. 진동	3,300
		4.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 소음도측정	7,100
수질검사(폐하 수·하천수· 먹는물 및 먹는샘물 등)		1. 수소이온농도	400
		2. 온도	300
		3. 맛 또는 냄새	항목당 400
		4. 전기전도도	400
		5. 색도(비색법 : 먹는물)	600
		6. 색도(투과율법 : 폐하수)	600
		7. 탁도	400
		8. 총경도	2,800
		9. 알칼리도·산도 또는 광산산도	항목당 2,800
		10. 유리탄산	2,800
		11. 탄산이온	2,800
		12. 강열잔류물	2,800
		13. 용해성 증발잔류물	2,800
		14. 부유물질	2,800
		15. 증발잔류물	2,800
		16.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800
		17. 잔류염소	2,800
		18. 노말-핵산추출물질	5,000
		19. 인산이온(인산염)	1,200
		20. 염소이온(염산염)	1,200
		21. 황산이온(황산염)	2,900
		22. 화학적 산소요구량	3,700
		2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600
		24. 용존산소시험	2,800
		25. 총인	2,800
		26. 총질소 또는 유기성 질소	항목당 2,800
		27. 암모니아성 질소	2,8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수질검사(폐하수·하천수·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28. 아질산성 질소	2,800
		29. 질산성 질소	2,800
		30. 시안	6,800
		31. 페놀류	3,800
		32. 음이온 계면활성제 (먹는물 또는 먹는샘물:세계)	7,800
		33. 불소	5,800
		34. 유기인, 유기염소, 카바메이트 또는 PCP	항목당 11,500
		35. 크롬·구리·카드뮴·납·세레늄·아연·망간 또는 철·알루미늄 등	항목당 6,600
		36. 비소	4,600
		37. 수은	4,600
		38. 6가크롬	4,600
		39. 알킬수은	6,600
		40. PCB	19,500
		41. 휘발성 저급탄화수소류	11,500
		42. 휘발성 화학물질	11,500
		43. 총트리할로메탄	11,500
		44. 일반세균 또는 저온 일반세균	항목당 4,200
		45. 대장균군	4,600
		46. 분원성 대장균군	4,600
		47. 분원성 연쇄상구균	7,600
		48. 녹농균	6,600
		49. 아황산환원 혐기성포자 형성균	4,600
		50. 쉬겔라	11,600
		51. 살모넬라	11,600
		52. 클로로필a	1,300
		53. 정화조 기능시험 (제거율시험 : 유입수 및 처리수)	9,600
		54. 붕소(Boron)	6,600
		55. 클로로포름	11,5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수료 (단위:원)
수처리제		1. 확인시험	성분당 500
		2. 수소이온농도	1,100
		3. 비중	700
		4. 염화물(염기도)	1,400
		5. 건조감량	600
		6. 체잔류물	700
		7. 암모니아성 질소	2,000
		8. 황산이온	3,000
		9. 물불용물	1,300
		10. 염기치환용량	1,500
		11. 경도	3,000
		12. 철·납·카드뮴·크롬·아연 또는 망간 등 중금속	항목당 7,000
		13. 비소	5,000
		14. 수은	4,900
		15. 정인산염시험	500
		16. 함량시험	1,800
		17. 산불용성 회분	2,500
		18. 유리알카리	600
살충살서제 및 유독물 시험		1. 확인시험	성분당 4,600
		2. 함량시험	성분당 5,700
		3. 순도시험	성분당 4,600
		4. 내용량(중량편차시험)	1,300
		5. 유화성 및 유화안정성 시험	1,300
전지류		전지류중 수은함유량	6,000
폐기물 및 토양검사		1. 수소이온 농도	800
		2. 수분 또는 고형물	항목당 400
		3. 강열감량 또는 유기물 함량	항목당 400
		4. 유분	5,000
		5. 페놀류	41,000
		6. 시안	
		가. 함유시험	7,600
		나. 용출시험	7,800
		7. 유기인	
		가. 함유시험	20,700
		나. 용출시험	23,800
		8. PCB	
		가. 함유시험	31,200
		나. 용출시험	32,100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수 수 료 (단위:원)
폐기물 및 토양검사		9. 휘발성 저급 탄화수소류	
		가. 함유시험	성분당 19,400
		나. 용출시험	성분당 20,100
		10. 크롬 · 구리 · 카드뮴 또는 납등 중금속	
		가. 함유시험	성분당 7,800
		나. 용출시험	성분당 9,400
		11. 비소	
		가. 함유시험	5,400
폐기물 및 토양검사		나. 용출시험	8,200
		12. 수은	
		가. 함유시험	4,500
		나. 용출시험	5,500
토양 중 잔류농약		13. 6가 크롬	
		가. 함유시험	3,000
토양오염 유발시설		나. 용출시험	7,000
		토양 중 잔류농약	성분당 20,700
		1. 시료채취비	시료당 70,000
침출수검사(수질검사와 동일)		2. BTEX	시료당 77,600
		3. TPH	시료당110,000
폐양기용제검사		1. 할로겐족화합물	성분당40,000
환경시료중 다이옥신류	소각장가스측정	다이옥신류 (2, 3, 7, 8 -치환이성체 17종)	1회당 2,050,000
	소각장가스분석	"	1회당 2,650,000
	토양, 폐기물, 물	" (1건당)	2,650,000
	정제시료	" (1건당)	850,000
	(주) 정제시료란 추출액에 EPA1613 방법에 따라 정제용내부표준물질을 넣어 실리카, 알루미늄 및 황성탄칼럼으로 정제한 시료를 의미한다. 이때 고분해능질량분석기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된 시료의 GC크로마토그램을 함께 제출하거나 혹은 분리칼럼을 제공하여야 한다.		
비 고 : 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개발된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별표 2]			
검사 · 시험성적서 등 재교부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단위 : 원)	
검사 · 시험성적서	1통	100	
검사 · 시험성적서의외국어번역문	1통	200	